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 외 18명
- 의안번호 : 제2575호
- 발의일자 : 2021년 8월 1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 안 이 유

-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나.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별도 첨부)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이 재 호)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운영과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처음 시행되면서¹⁾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와 산림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음.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시설로서 동법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에 따라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71개소를 조성²⁾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원 조성연도별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3개소	9개소	6개소	10개소	13개소	6개소	5개소	11개소	8개소	71개소

-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종전의 제5조)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2항의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과 제5조의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40호, 2011. 7. 25., 제정]

2)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등록현황: 조성 71개소, 등록 53개소, 미등록18개소(추진예정 및 심사 중)

- 세부적으로 안 제6조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³⁾에서 정의한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종합산림복지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에서 정한 업종 기준 및 업무범위로 볼 때 ‘산림치유업’을 포함하여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중 하나의 사업을 등록하면 유아숲체험원 위탁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붙임1~3 참조)

- 특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⁴⁾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상시 참여 유아의 인원수는 유아숲지도사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지도사 3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지만, ‘종합산림복지업’은 유아숲지도사가 없거나 최소 1명만 있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바, 모집자 공모 시 해당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에 부합하도록 공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붙임4 참조)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 유아숲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유아숲지도사 수	1명	2명	3명
상시 참여 유아수	25명 이하	26명 이상 50명 이하	51명 이상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1 시행령 참조)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3]. (※붙임3 참조)

[붙임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붙임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제25조제1항 관련)

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전문인력	시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사무실
2. 제3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업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3명 이상	사무실
3. 제3조제3호에 따른 유아숲교육업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및 지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 숲지도사 3명 이상	사무실
4. 제3조제4호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업	등산 또는 트레킹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사무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를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사무실

비고

-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증의 종류별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시설: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산림복지전문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전문인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인력기준이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복지전문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자재를 갖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로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붙임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구성·운영하는 시설의 종류	배치기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를 배치할 것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것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것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6.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 이 지정하는 시설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할 것

[붙임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